



국내(기계체조) 경기 로컬룰(3+2종목/6→8위) 시행의 건



1. 3+2 종목 의무 실시의 건

가. **관련근거:** 2017년도 제2차 (합동)경기위원회 결의(2017. 9. 18./ 2017. 12. 18.) 결의 외

나. 배 경

- 현재 국제연맹 규정상 1인 1기의 종목 참가는 올림픽 메달 획득에 나름 효과가 있었으나 2000년 이후 특정 종목(뛰는 종목) 선호로 체조의 기본기가 무시되는 경향도 있으며
- 국내 여건상 이는 소위 절름발이 체조선수를 양성하는 부작용으로 표출되며 장기적으로는 단체 및 개인종합 경기력 저하로 열악한 우리 체조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이는 우리 체조의 균형적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적어도 남자선수 3종목, 여자선수 2종목을 필수적으로 의무 실시함으로써 이를 보완 및 개선해 가고져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다. 방 침

- 기계체조 경기 시 남자 3종목 + 여자 2종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선수만이 결승전 진출 가능토록 함
- 필요시 기본 점수 부여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도모

라. 주요내용

- 종목별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목과 기본점수가 필요함
- 실시 종목(예시 / 안)
 - 남자는 뛰는 종목(마루운동, 도마), 지지하는 종목(안마, 평행봉), 매달리기 종목(링, 철봉) 중 각 1종목씩 총 3종목 선택 실시
 - ※ 예시: (마루운동)+(안마)+(링) / (도마)+(평행봉)+(철봉) 등
 - 여자는 이단평행봉을 필수 종목으로 하며 1종목을 추가로 선택하여 총 2종목 실시
 - ※ 예시: 이단평행봉(필수) + (마루운동), (평균대), (도마) 종목 중 1종목 선택 실시
- 기본점수 부여(안)
 - 남자는 3종목 합계점수가 30점 이상, 여자는 2종목 합계점수가 2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
 - 3종목 / 2종목의 합계점수가 각 30점 / 20점 미만일 경우, 1종목을 추가로 출전하여 기본점수를 충족시킬 수 있음

마. 종목별 선수의 단체점수 적용 방법

- 종목별 결승진출을 위한 선수는 단체경기 시 본인 점수의 단체전 포함여부를 경기시작 전(참가신청 시 표기) 신청서를 통해 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며 신청하지 아니한 종목별 결승진출을 위한 선수의 득점은 단체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7.5.4제도를 종목별 결승진출을 위한 선수의 단체전 점수 포함 여부에 따라 7.6.4로 실시할 수 있다. 단, 해당 종목에 1명씩만 허용 예정임.

바. 적용대회 및 대상(안)

- 국내대회 : 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한 협회 전체 국내대회 (단, 국가대표 선발전 및 국제대회 파견대표 선발전은 제외)
 - ※ 소년체육대회, 전국체육대회는 일정기간 유예 후 실시 예정임.
- 적용대상 : 기계체조(남,여)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까지 선수해당
 - ※ 대학부, 일반부는 추후 실시여부 판단 예정임.

사. 시 행 일: 2018. 1. 1. 일부

2. 종목별(기계체조) 결승 경기 8위까지 적용 실시(안)

가. 사유(목적)

- 현행 종목별 결승경기 참가 선수의 제한(6위까지)를 오랜 시행 당시 경기시간 축소 등 사유로 관례(로칼룰) 시행해 왔으나
- 국제연맹 룰에 의거 8위까지 선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환원 시행코져 함

나. 방 침

- 국제 룰에 의거 종목별 결승 경기는 8명 적용 예정임

다. 시행시기: 2018. 1. 1. 일부